

사용중지 표시증

종류		기물번호	
사유			

위의 계량기는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한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·구청장

직인

계량검사공무원 인

※ 유의사항

위의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.